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김은심 전화 052-228-4462	보 도 자 료 2021. 3. 18.(목)

제 목	코로나19 방역방해 및 불량 마스크 유통 사범 13명 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제11조 제1항)

- '21. 3. 17.~18.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수권)은 해외 입국 또는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이를 위반한 감염병예방법위반 사범 2명, 보건당국으로부터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유흥주점 운영자, 종교단체 대표자 2명, 불량마스크를 유통한 사범 9명 등 총 1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울산지방검찰청은 '21. 1. 1. 이후 현재까지 자가격리조치위반 사범 8명(8건), 집합금지명령위반 사범 13명(13건), 불량 마스크 유통 사범 9명(2건) 등 총 30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방역 저해행위가 감소하지 않고 있으므로, 울산지방검찰청은 코로나19 관련 각종 보건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임

1 자가격리조치위반 사건

○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조치를 받고도 격리 장소를 이탈한 자들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함

순번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
1	A○○(26세)	'21. 1. 14.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21. 1. 25.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식당, 친구집 등을 방문
2	B○○(20세)	'21. 2. 28.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21. 3. 1.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아르바이트 중인 카페로 출근

2 집합금지명령위반 사건

○ 대상 업소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이 있었음에도 유흥주점에서 지인을 초대하여 유흥한 자, 대면예배를 실시한 종교단체 대표자 등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함

순번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
1	C○○(51세)	'20. 12. 23.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고도 '20. 12. 25. 교회 성도 9명과 함께 대면예배
2	D○○(39세)	'21. 1. 17.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고도 '21. 1. 24. 유흥주점에서 지인 4명에게 술 등을 제공

3 불량 마스크 유통 사건

○ 의무기재사항을 미기재하고, 분집포집율 기준 미달 불량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한 자들을 **약사법위반**으로 기소함

순번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
1	E○○(67세) F회사 G○○(62세) H회사 I○○(48세)	-F회사 대표 E○○은 '20. 1.경 H회사 대표 G○○에게 의무기재사항 미기재 및 분진포집율 기준미달 불량 보건용 마스크 약 40만장을 판매 -H회사 대표 G○○은 '20. 1.~2.경 위 불량 보건용 마스크 약 40만장을 유통업체 등에 판매 -I○○은 '20. 2.경 위 G○○으로부터 구입한 위 불량 보건용 마스크 약 4만장을 판매
2	J○○(59세) K○○(48세) L○○(48세) M○○(41세)	-J○○은 '20. 1. 28. 및 '20. 2. 8.경 K○○에게 의무기재사항 미기재한 보건용 마스크 약 9만장을 판매 -K○○은 '20. 1. 28., 2. 8.경 중국 소재 업체 등에 의무기재사항 미기재한 위 보건용 마스크 약 8만장을 판매하고, L○○, M○○는 K○○을 도와 화물운송업체 물색, 마스크 구입, 운반 등을 하여 방조

4 향후 계획

○ 향후에도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임